

페이스북의 혐오 게시물 삭제 범위에 대한 유럽사법재판소의 결정 - EuGH, 2019.10.03 C-18/18 결정을 중심으로 -

심나리 독일 레겐스부르크대학 박사과정



I. 들어가며

페이스북 등 인터넷 플랫폼에서의 혐오 게시물에 관한 문제는 더 이상 새로운 문제가 아니다. 정치인이나 연예인 등 일반 공중에게 쉽게 노출되어 있는 경우에서부터 개인 간의 비방에 이르기까지 그 문제의 유형 또한 다양하다. 더구나 한번 인터넷에 유포된 혐오 게시물은 매우 쉽게 재생산된다. 인터넷에서의 혐오 게시물에 대해 당사자는 어떠한 주장을 할 수 있는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어느 범위까지 책임을 지는가? 특히 문구가 동일하게 반복되거나 동일한 의미를 담은 채 혐오 게시물이 재생산되는 경우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가?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최근 유럽사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놓았다.

II. 오스트리아 녹색당 대표의 페이스북에 대한 혐오 게시물 삭제 청구

* 이 글에 쓰인 용어와 관련해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플랫폼 운영자, 그리고 소셜 네트워크 모두 페이스북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유럽사법재판소의 결정에서는 페이스북을 소셜미디어 플랫폼으로 칭하고 있으며, 유럽전자상거래 지침에서 페이스북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규정의 적용을 받고 있다.

1. 사실관계

2016년 4월, 문제의 페이스북 이용자는 자신의 프로필 페이지에 오스트리아 온라인 뉴스 잡지 oe24.at의 “녹색당: 난민을 위한 최저생계비(Mindestsicherung)가 유지되어야 한다”¹⁾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했다.

페이지에는 원래 웹사이트의 “썸네일 미리보기”가 올려졌으며, 여기에는 기사 제목 및 기사 요약 내용, 그리고 에바 글라비시니 피스체크(Eva Glawischnig-Piesczek)의 사진이 포함되었다.

해당 이용자는 이 기사에 대한 코멘트를 게시했는데, 이 코멘트에서는 무엇보다도 정치인 글라비시니 피스체크 녹색당 의장이 “더러운 매국노”로 묘사되었다. 동 게시물은 모든 페이스북 이용자에게 공개되었다.

오스트리아 국회의원이자, 녹색당의 의장인 글라비시니 피스체크는 아일랜드 페이스북을 오스트리아 법원에 고소했다. 그녀는 어떤 이용자에 의해 게시된,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코멘트 및 이와 문구가 동일하거나 의미가 동일한 주장을 삭제할 것을 페이스북에 청구했다.

〈그림 1〉 문제가 된 오스트리아 (oe24.at)의 기사



2. 오스트리아 법원의 판단

페이스북이 이 요구에 응하지 않자, 그녀는 오스트리아 빈 상사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²⁾ 원고의 청구가 1심 법원에서 인용되었기 때문에, 페이스북은 동 게시물을 보이지 않게 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따라서 페이스북은 동 게시물에 대한 접근을 차단했다. 그러나 이는 오스트리아 내에서만 가능했다.

이어 항소법원에서 동 결정이 확정되었으며,³⁾ 그 후 관련 소송의 양 당사자는 오스트리아 대법원⁴⁾

1) 기사 원문: <https://www.oe24.at/oesterreich/politik/Gruene-Mindestsicherung-fuer-Fluechtlinge-soll-bleiben/230318208>

2) Beschluss des Handelsgerichts Wien, 2016.12.07, GZ 11 Cg 65/16w-17

3) Beschluss des Oberlandesgerichts Wien als Rekursgericht, 2017.04.26, GZ 5 R 5/17t-23

4) OGH, 2017.10.25 6Ob116/17b, https://www.ris.bka.gv.at/Dokument.wxe?ResultFunctionToken=3c36f68d-7280-4490-878c-e5069776617c&Position=1&Abfrage=Justiz&Gericht=&Rechtssatznummer=&Rechtssatz=&Fundstelle=&AenderungenSeit=Undefined&SucheNachRechtssatz=True&SucheNachText=True&GZ=6+Ob+116%2f17b&VonDatum=&BisDatum=11.01.2018&Norm=&ImRisSeitVonDatum=&ImRisSeitBisDatum=&ImRisSeit=Undefined&ResultPageSize=100&Suchworte=&Dokumentnummer=JT_20171025_OGH0002_00600B00116_17B0000_000

에 상고했다. 마지막으로 이 사안을 다룬 오스트리아 대법원은, 해당 코멘트가 원고의 명예를 모욕하고 비난하고자 하는 목적이었다는 견해를 보였다. 그러나 글라비시니 피스체크는 게시물 차단 의무가 구체적으로 이의가 제기된 게시물에만 국한되지 않도록 하고자 했으며, 오스트리아 법원은 이 법적 분쟁이 유럽연합법률 문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유럽사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III. 유럽사법재판소 - 선결문제

1. 페이스북이 문제가 된 코멘트를 전세계적으로 차단 및 삭제해야 하는가?

이러한 처분의 범위를 문제된 게시물과 문구상 또는 의미상으로 동일한 게시물로까지 확장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차단 및 삭제 의무를 전세계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지가 결정되어야 했기 때문에, 오스트리아 법원은 유럽사법재판소에 우선 전자상거래지침⁵⁾ 제15조의 해석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했다.

- 플랫폼 운영자가 문구가 동일한 게시물을 제거할 의무를 부담할 수 있는가?
- 플랫폼 운영자가 의미가 동일한 게시물을 제거할 의무를 부담할 수 있는가?
- 특정 이용자가 해당 게시물을 삭제해야 하는가?
- 만약 그렇다면, 이는 회원국에만 적용되는가 아니면 전세계적으로 적용되는가?
페이스북이 혐오게시물에 관하여 단지 알고만 있어만 하는가, 아니면 페이스북이 스스로 이에 대해 모니터링해야 하는가?

유럽연합의 회원국은 유럽연합의 지침을 받아들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한다. 이러한 지침 중 하나인 유럽연합 전자상거래지침에 따르면 회원국은 정보에 있어 자유로운 역내시장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 다만 이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데 공공질서의 보호, 특히 청소년 보호, 인종, 성별, 신념 또는 국적을 이유로 하는 비방, 나아가 개인의 존엄성 침해에 포함하여 범죄의 예방, 조사 및 기소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조치가 대표적이다. 이러한 조치들은 개별 사안에 대해 한정적으로 행해져야 한다.

5) RICHTLINIE 2000/31/EG DES EUROPA´ ISCHEN PARLAMENTS UND DES RATES vom 8. Juni 2000 über bestimmte rechtliche Aspekte der Dienste der Informationsgesellschaft, insbesondere des elektronischen Geschäftsverkehrs, im Binnenmarkt "Richtlinie über den elektronischen Geschäftsverkehr" (Amtsblatt der Europäischen Gemeinschaften L 178/1 v. 17.7.2000 S.1).



동 지침은 특히 페이스북 같은 소셜 네트워크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일반적으로 회원국이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한 정보를 모니터링하거나 의도적으로 불법성을 조사할 의무를 부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동 조항의 목적은 이용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제한하는 것이다. 이러한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과 관련하여 오스트리아 법원은 전자상거래지침 제15조가 사법적으로 이의가 제기된 게시물 및 이와 문구상 그리고 의미상 동일한 게시물을 차단하거나 삭제할 의무를 배제할 수 있는지를 알고자 했다. 더 나아가 동 법원은 삭제 의무의 공간적 범위, 즉 삭제 조치가 전 세계적으로 요구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했다.

2. 유럽사법재판소의 해석

(1)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우선 유럽사법재판소는 전자상거래지침이 원칙적으로 회원국 법원 또는 행정당국이 서비스 제공자에게 법률위반내용을 제거하거나 일반적 예방의무를 갖도록 요구하는 것을 막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한다. 오히려 동 지침 제14조 제3항은 서비스 제공자가 법률위반에 대한 인식 부족을 이유로 책임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에도 또한 이러한 가능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동 지침 제15조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일반적인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하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모니터링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유럽사법재판소는 전자상거래지침 제15조가 법원 처분의 전 세계적인 효력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고 명시한다. 그러나 이러한 처분이 국제적인 규정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은 회원국의 책임이다.

(2) 플랫폼 운영자의 책임

사실 플랫폼 운영자는 연방법원의 의견에 의하는 것은 물론, 원칙적으로도 제3자 콘텐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간접적인 침해자로서의 범위 내에서 보더라도, 플랫폼 운영자는 자신의 플랫폼에서 권리침해가 발생했는지에 대해 일반적으로 예방적인 심사를 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페이스북 같은 운영자는 일단 권리침해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는, 지체 없이 조치를 취해야 한다. 즉 위법한 콘텐츠를 제거하거나 접근을 차단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권리침해가 앞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BGH, Az. I ZR 155/09).⁶⁾

사례 :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영화를 공유 플랫폼에 업로드하고 운영자가 해당 영화를 삭제할 의무가 있는 경우, 플랫폼 운영자는 해당 영화를 다시 업로드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하거나 즉시 삭제해야 한다. 함부르크 지방법원은 공유 플랫폼의 경우, 단어 및 해시태그에 기반한 필터링뿐만 아니라 수동적인 후속검토도 기대할 만하다고 판단했다(LG Hamburg, Az. 310 o 461/10).

그러나 유럽사법재판소의 결정은 전자상거래지침 제15조에 대한 독일의 좁은 해석을 무효화할 수 없었다. 유럽사법재판소의 판사가 일반 예방의무에 대한 금지를 광범위하게 해석하는 한도에서, 페이스북과 같은 플랫폼 제공자는 앞으로 더 이상 권리침해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없다.

IV. 전자상거래지침에 대한 견해: 통지-차단유지(notice and stay-down)

2019년 6월 4일 폐회 발의에서 법률고문관 마키에즈 슈푸나르(Maciej Szpunar)는 유럽연합의 전자상거래지침이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법원의 명령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플랫폼 전체 이용자에 의해 게시된 정보를 검색하고, 그 중 법원에 의해서 위법하다고 결정된 정보와 문구가 동일한 정보를 식별하도록 명령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견해를 주장했다.

이러한 견해에 따른 경우, 관련 기본권들(이를 테면 개인정보 보호 및 인격권 보호, 기업의 자유 보호 및 의사표현의 자유 보호, 정보자유 보호) 사이의 균형을 맞출 수 있다. 이러한 접근 방식에

⁶⁾ <http://juris.bundesgerichtshof.de/cgi-bin/rechtsprechung/document.py?Gericht=bgh&Art=en&az=I%20ZR%20155/09&nr=56264>

서는 위법하다고 결정된 정보와 문구가 동일한 정보를 식별하는 데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는 정교한 기술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 또 한편으로, 정보가 쉽게 재생산될 수 있는 인터넷 영역에서 개인 정보 및 인격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데 필요한 접근법이라고 입증되었다.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법원 명령에 의해 위법한 것으로 결정된 정보와 의미가 동일한 정보를 탐지하고 식별할 의무를 가질 수 있지만, 여기서 그는 이용자에 의해 위법한 정보가 게시된 게시물을 검색만 하면 된다. '의미가 동일한 정보'의 삭제 여부를 결정하는 법원은, 그 처분의 효과가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예측 가능할 것을 보장해야 한다. 이 경우 관련 기본권이 이익형량되어야 하며, 비례 원칙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용자들이 게시한 '의미가 동일한 정보'를 식별할 의무를 통해서, 관련 기본권 사이의 균형 잡힌 비례가 반드시 창출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정보를 추적하고 식별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많이 드는 솔루션이 필요하며, 이러한 솔루션의 투입은 검열로 이어져 의사표현의 자유와 정보의 자유가 체계적으로 제한될 수도 있다.

더구나 법률고문관의 관점에 따르면 해당 지침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유포된 정보를 제거해야 할 의무의 공간적 범위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 때문에 동 지침이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전세계적으로 이러한 정보를 제거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공간적 범위는, 글라비시니 피스체크가 이 사안에서 유럽연합법을 원용한 것이 아니라, 명예를 포함한 사적 영역 및 인격권 침해에 관한 오스트리아 민법의 일반조항을 원용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유럽연합법으로 규율되지 않는다.

삭제 의무를 부과하는 법원 명령의 외부 영향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그러한 의무의 공간적 범위에 관한 문제는 국제법과 국제 민법에 근거하여 심사되어야 한다. 또한 지침은, 이해당사자, 제3자 또는 다른 출처로부터 표시가 도출된 경우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위법한 것으로 결정된 정보와 의미가 동일한 정보를 제거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막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러한 경우 '정보 제거 의무'가 저장된 정보의 일반적인 모니터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V. 유럽사법재판소의 결정과 이에 대한 평가

2019년 10월 3일 결정에서 유럽사법재판소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삭제 의무와 관련하여 전자상거래 지침의 효력 범위에 대해 언급했다. 특히 자국 법원이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이른바 혐오 게시물을 삭제할 의무를 강제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구체적으로 다루었다. 유럽사법재판소는 회원국 법원에 넓은 재량권을 인정했다. 그러나 미디어에서 부분적으로 제안된, 페이스북이나 기타 소셜 네트워크에 대한 직접적인 삭제 의무는 결정에서 도출되지 않았다.



1. 문구가 동일한 경우 게시물의 차단과 삭제가 요구될 수 있음

모욕적인 내용을 담은 게시물에 대해, 페이스북과 같은 서비스 제공자의 삭제의무는 어디까지 인정될 것인가?

유럽사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르면, 페이스북 같은 플랫폼에서 모욕을 당한 자는 플랫폼 운영자에게 게시물 자체뿐만 아니라 문구가 동일한, 심지어 의미가 동일한 게시물을 검색하여 삭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는 전세계적인 효력을 가진다.

구체적인 사례는 특히 게시물의 위법성이 법원에서 결정되는 경우에 존재한다. 소셜 네트워크에서는 정보가 빠르게 유포되기 때문에, 다른 이용자에 의해 위법한 것으로 분류된 게시물이 복제되거나 공유될 위험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범위 내에서 국가 법원은 이해당사자가 문구가 동일한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업로드를 차단할 것을 플랫폼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해당사자를 보호한다. 유럽사법재판소에 따르면, 문구가 동일한 것 자체만으로 서비스 제공자의 일반적인 감독의무가 발생된다고 받아들여질 수 없다.

이제까지의 법적 상황은, 모욕이나 혐오 게시물의 피해자가 위반을 보고하고 페이스북 측에서 삭제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위반이 재차 나타나는 경우, 피해자는 다시 검색을 하여 페이스북에 새롭게 보고해야 했다.

오늘날 유럽사법재판소는 이 원칙을 중단했다. 게시물의 모욕성이 법원에서 결정되면 페이스북은 장래적으로 이러한 모욕적 표현이 더 이상 소셜 네트워크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형태로 게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는 분명 이해관계인 보호 차원에서 개선된 조치라고 볼 수 있으며, 이런 점에서 유럽사법재판소의 결정은 타당하고 이행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 기술적으로도 동일한 단어를 알고리즘으로 스캔하여 위법한 게시물을 직접 차단하는 것이 가능하다.

2. 의미가 동일한 게시물의 경우 세부 정보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차단 및 삭제

유럽사법재판소는 '의미가 동일한 게시물'에 관한 판단은 우선, 게시물의 내용이 본질적으로 변함 없이 위법한 게시물로 이해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는 입장이다. 유럽사법재판소에 따르면, 이해관계인의 손해를 효과적으로 피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의미가 동일한 게시물도 제재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문구는 약간 다르지만 본질적으로 의미는 동일한 메시지가 계속해서 전파되는 것이 쉬워질 것이고, 이 경우 이해관계인은 다양한 절차를 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모니터링 의무를 허용하지 않기 위해서는, '의미가 동일한 게시물'로서 효력을 가지기 위한 특정한 세부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세부사항은 위법이라고 확정된 법원의 결정에서 언급되어야 하며, 침해받은 사람의 이름 또는 침해가 있던 상황 등이 세부사항에 해당될 수 있다. 어쨌든 서비스 제공자는 내용의 위법성에 관하여 자율적으로 판단하도록 강요받아서 안 된다.

그러나 어떠한 게시물의 위법성이 단지 문구에 기초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상황의 전체적인 관점에서 발생하는 경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특히 의미가 동일한 '모욕'은 컴퓨터 알고리즘을 통해서만 전혀 찾을 수 없다. 이 경우 특정 게시물이 누구에 의해 또는 어떠한 범위에서 게시되었는지가 중요할 수 있다. 따라서 페이스북이 이제 이 판결을 어떻게 이행할지에 귀추가 주목된다.

3. 동 판결에 대한 평가 및 관철 가능성

유럽 내 특정국가의 법원이 해당 국가뿐만 아니라 유럽연합 회원국, 그리고 전세계적 영역에서 위법한 게시물을 차단하기 위해서, 페이스북에 게시물 삭제 의무를 강제할 수 있는지가 판단되어야 했다. 여기서 유럽사법재판소는 이는 이론적으로 가능하며, 적어도 전자상거래지침이 이에 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물론 동 재판소는 국제적인 표준이 이러한 광범위한 의무를 허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수년 동안 페이스북은 게시물의 삭제에 대해 너무 느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에 대한 배경은 페이스북이 가능한 한 모든 게시물 삭제 조치를 기술로 해결하고자 했고, 이에 가능한 한 적은 사




람들을 투입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제 소셜 네트워크는 그간의 행동에 대해 대가를 지불할 차례가 되었다. 유럽사법재판소는 판결에서, 구문이 동일하거나 의미가 동일한 그리고 자동적으로 제거될 수 있는 반복되는 모욕만 삭제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페이스북은, 컴퓨터가 위법한 문구와 유사한 키워드를 골라낼 수는 있으나, 새로운 게시물이 위법 결정을 받은 표현과 의미가 동일한지는 여전히 사람이 판단하여야 한다는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동 판결은 매우 모순적이라는 평가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더구나 ‘의미가 동일한’ 게시물을 실무적으로 찾아내기란, ‘구문이 동일한’ 게시물을 찾아내는 것보다 어려울 수 있다. 이해관계인이 다양한 절차를 취해야만 하는 부담을 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번 조치는 분명 환영 받을 만한 하다. 그러나 ‘의미 동일성’을 확정하는 데에는 반드시 평가요소가 포함되기 때문에, 유럽사법재판소가 의미동일성을 확정하기 위해 서비스 제공자의 자율적 판단을 필요로 하는 삭제 의무의 경계를 파악하기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의미가 동일한 게시물은 문구가 동일한 게시물보다 자동화된 인식을 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훨씬 어렵다. 내용적인 문구 인식은 여전히 컴퓨터에게 어려운 작업이다. 게시물의 의미동일성이 애매한 상황에서는 소셜 네트워크가 책임을 피하기 위해 포괄적으로 게시물을 삭제해 버릴 수도 있다. 이는 실제로 페이스북이 비판한 것처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도 있다.

동 판결은 현재는 페이스북에만 적용되지만, 모든 소셜 네트워크에 대해서도 원용 가능하다. 권리침해가 발생하면 운영자는 문구가 동일하거나 의미가 동일함으로 인해서 권리침해가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는 소규모 네트워크 또는 포럼 운영자에게도 이제 위법한 게시물을 인식하기 위한 기술적 제고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대다수 서비스 제공자의 경우 아직 유럽사법재판소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다. 더군다나 어떻게 컴퓨터 기술이

의미가 동일한 게시물을 찾을 것인지는 베일에 싸여 있다. 인공지능의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는 게시글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다.

인공지능이 게시글의 의미를 이해하는 기술이 아직 시작점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유럽사법재판소가 알고 있는지는 확신할 수 없다. 만일 이 판결이 진지하게 받아들여지면, 페이스북은 앞으로 오스트리아 녹색당 대표에 대한 모욕과 현재의 유럽사법재판소 판결에 관하여, 부분적으로라도 페이스북에 게시되는 전통적인 미디어의 뉴스 전체를 삭제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전통적인 미디어는 녹색당 대표가 어떻게 모욕적인 공격을 당했는지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모욕적 표현을 재차 언급할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는 자체적으로 모욕을 구성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맥락에서 모욕에 대한 언급은 허용되긴 하지만, 앞으로 컴퓨터가 기술적으로 이를 어떻게 인식할 것인지가 문제이다.

이미 언급했듯이, 동 판결에 의해서 페이스북이 포괄적인 혐오 게시물 삭제 의무를 부담한다는 결론이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 유럽사법재판소는 단지, 전자상거래지침 제15조가 광범위한 삭제의무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일 뿐이다. 그러므로, 삭제 의무의 구체적인 범위란 각 국가 법원에 의해 판단되어야 하는, 각 국가의 법률 규정에 대한 문제에 해당한다. 또한 페이스북이 삭제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은 국가 법원을 통해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이 사안을 법 정책적으로 봤을 때, 표현의 자유가 한편에, 그리고 혐오 게시물로부터의 이해관계인 보호가 다른 한편에 있다. 전자상거래지침의 해석과 관련하여 유럽사법재판소의 동 판결은 적어도 '의미가 동일한 게시물'과 관련해서, 위에서 설명한 약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유럽사법재판소의 동 판결은 아마도 서비스 제공자의 혐오 게시물 삭제 범위에 관한 판단과 관련해 최종적 판결은 아닐 것이다. 

참고사이트

- 1) www.cmshs-bloggt.de/lmc/eugh-loeschpflicht-von-hassposting-facebook-social-media-diensteanbieter/
- 2) <https://www.wbs-law.de/it-und-internet-recht/loeschpflicht-inhalte-host-provider-facebook-37565/>